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와 전통적 조공관계의 성격*

구 선 희**

- I. 머리말
- II. 조선의 문호개방과 전근대 조공관계의 동요
- III.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전통적 조공관계의 와해
- IV. 조선에 대한 청의 근대 식민지적 지배와 조선중립화론
- V. 청일전쟁 이전 조선·청·일의 조선 '속방 자주' 논란과 그 의미
- VI. 맺음말

요약

1876년 조선의 문호개방은 단순한 '개국'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조선은 전래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로서의 조공관계를 청과 유지하면서 일본 및 서구와는 만국공법적인 조약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것은 전근대적 조공체제 아래에서의 조·청·일 삼국의 전통적 관계가 만국공법체제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국제관계로 바뀌어감을 의미했다. 이로써 조선은 서로 다른 국제질서가 공존하는 가운데 자주적 근대화를 위한 개화정책을 추진해야 했던 것이다.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5-A20001)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투고일 2005. 11. 4.

심사일 2005. 11. 17.

심사완료일 2005. 12. 2.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초기개화정책이 전근대 조공관계의 타파라는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었지만, 오히려 조선이 청과의 관계에서 근대적 ‘속국’으로 변질되어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의 초기개화정책은 전래적인 조공관계의 틀 내에서 이를 이용하면서, 또한 그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의 개화정책 추진은 청이 조선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임오군변 이후 청일전쟁으로 조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청이 가해온 정치적·군사적 폭력을 동반한 외압은 조선의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저해한 결정적 외적 요인이었다. 1882년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이 외적 요인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토대가 되었다.

‘장정’ 체결을 계기로 조선과 청의 전통적 조공관계가 와해된 상태에서도 전통적 조선 ‘속방’ 문제는 조선 자체를 비롯해 청, 일본에 의해 자국에 유리한 대로 서로 이용되는 테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청이 조선에서 물러나자 조선과 청간의 전근대적 조공관계가 드디어 폐기되었다는 인식의 오류도 나오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좌절로 인한 내정 실패가 1894년 농민전쟁으로 폭발된 후, 조선과 청, 그리고 일본 사이에 일어난 조선 ‘속방 자주’ 논란은 청과 일본이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상투적으로 이용했던 實例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궁극적인 목적은 조선에 대한 근대 식민지적 지배권을 유지 또는 확보하려는 과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주제어 : 개화정책, 전통적 조공관계, 외압, 원세개, 유길준

I. 머리말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그에 대한 조선·청·일본의 대응 과정은 삼국이 그들 관계에서 관철되던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로서의 조공체제로부터 어떻게 만국공법체제로 편입되어 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삼국의 이 과정은 조선을 가운데 놓고 청과 일본 그리고 서구 제국과의 관계 속에 응축되어 나타났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로 조선은 일본과는 불평등조약에 기초하긴 했어도 독립국 대 독립국이란 평등한 관계를 가졌지만,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전통적 조공체제하 조공·책봉 관계 속에서 ‘속방’의 위치에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은 청과의 조공관계로부터의 탈각이란 과제를 안고 추진되었다.

문호개방 이후 1894년 농민전쟁에 이르는 시기 조선에 외압을 가해온 국가는 청과 일본이었지만 임오군변 이후는 청의 정치적·군사적 외압이 보다 조선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했다. 이 시기 청의 외압은 조공관계라는 전통적 관계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는 그 이전과는 질적 차별성을 갖는 근대적 성격의 외압으로 작용했고, 그 과정에서 조·청·일 삼국간의 새로운 국제관계가 정립되어 나갔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의 관계에 대한 성격 해명은 좁게는 조선에 가해진 외압의 본질과 조선의 자주적 근대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넓게는 삼국의 전통적 관계가 서구 만국공법체제로의 편입이라는 역사적 조건 아래서 와해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이 때문에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축적

되어 왔다.) 그러나 그 성격에 대한 규정은 연구자의 역사인식에 따라, 연구의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청일전쟁까지 전통적 조공관계가 지속되었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조선에 가중되는 청의 외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세계적 규정성이 강요되던 상황에서 조선의 초기개화정책이 전근대 조공관계의 타파라는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었지만, 오히려 조선이 청과의 관계에서 근대적 ‘속국’으로 변질되어 가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에서 기능한 전근대적 조공관계는 실질적으로 1882년

1) 조·청 관계에서 나타나는 조공관계의 성격에 관한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卷, 朝鮮總督府中樞院; 彭澤周, 1969 『明治初期日韓清關係の研究』, 東京:塙書房; 林明德, 1970 『袁世凱與朝鮮』,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____, 1984 가을호, 「甲申政變 前・後期の 清國の 對韓 정책」, 『季刊京郷 思想と 政策』; ____, 「李鴻章對朝鮮の宗藩政策」,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主編, 1995 『韓國研究論叢』第一輯, 上海:人民出版社; 梶村秀樹, 「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帝國主義體制への移行」, 梶村秀樹・富岡倍雄 編, 『發展途上經濟の研究』東京:世界書院, 1981 「동아시아지역의 제국주의체제로의 이행」, 김영호 편, 1983 『근대 동아시아와 일본제국주의』, 한밭출판사; 陳偉芳, 「甲午戰前朝鮮의 國際矛盾與清政府의 失策」, 山東省歷史學會 編, 1986 『甲午戰爭九十周年紀念論文集』, 濟南:齊魯書社; 浜下武志, 「近代東アジア國際體系」, 平野健一郎 編, 1994 『地域システムと國際關係』講座現代アジア 4, 東京:東京大出版會; ____, 「朝貢と條約 - 東アジア開港場をめぐる交渉の時代 1834-94」, 溝口雄三・浜下武志・平石直昭・宮嶋博史 編, 1994 『周縁からの歴史』アジアから考える[3], 東京:東京大出版會; ____, 「地域研究とアジア」, 溝口雄三・浜下武志・平石直昭・宮嶋博史 編, 1993 『地域システム』アジアから考える[2], 東京:東京大學出版會; ____, 1997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東京:岩波書店; 糟谷憲一, 「近代的外交體制の創出 - 朝鮮の場合を中心に」,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1992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II 外交と戦争, 東京:東京大學出版會; 茂木敏夫, 「中華世界の「近代」的變容 - 清末の邊境支配」, 溝口雄三・浜下武志・平石直昭・宮嶋博史編, 1993 『地域システムアジアから考える[2]』, 東京:東京大出版會; 岡本隆司,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 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名古屋大學出版會; 金鳳珍, 2005, 「書評 岡本隆司『屬國と自主のあいだ - 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 『歴史學研究』No. 808, 東京:歴史學研究會.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로 와해되었음이 밝혀질 것이다.

II. 조선의 문호개방과 조공관계의 동요

1. 1870년대 조선·청·일본의 조공관계에 대한 인식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하나였던 조공관계는 중주국과 조공국(또는 附庸國)과의 관계다. 중국사에서 나타나는 말을 사용하면 “上國”과 “屬國”·“藩屬”·“朝貢國”과의 관계다.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관계는 중국과 개개의 조공국과의 사이에 다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²⁾ 조선은 1876년 문호개방을 즈음한 시기에도 청과 조공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청으로부터 대외관계에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할 즈음 조공관계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달랐다. 이것은 조선정부가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의 하나이기도 한데, 바로 조선의 문호개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갖는 청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2) 그렇지만 조공관계에서 갖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었다. 그것은 ① ‘상국’인 중국의 황제는 조공국의 지배자를 국왕에 冊封하며 - “책봉”관계 ② 조공국에 중국의 曆(時憲書)을 사용하게 하고 - 正朔을 받듯 ③ 조공국에게 정기적으로 중국에 조공을 보내게 하며 중국 황제는 이에 대해 回賜 - “朝貢回賜” 관계 -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책봉 관계도 없고, 정삭을 받드는 관계도 없고, 단순히 조공회사 관계만 성립하고 있는 관계도 있을 수 있다. ④ 중국측에서 본 경우 조공관계를 지탱해주는 이데올로기는 華夷思想(中華思想)이다. 이것은 중국 문화(德治主義를 핵심으로 함)가 문화 자체일뿐 아니라 세계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곧 중국 문화를 제쳐놓고는 있을 수 없다는 사고 방식이다. 지상의 모든 나라는 실제로 중국에 조공을 하건 하지 않건 이론상 중국의 조공국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우월감이 화이사상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조. 坂野正高, 1973 『近代中國政治外交史 - ヴァスコ・ダ・ガマから五四運動まで -』,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76-77쪽.

1860년 北京條約으로 서양이 청에 진출한 후 청이 서양 제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조선에 전해졌지만 조선정부내에 큰 동요는 없었다. 그러나 청에 갔다 온 사신들 사이에 국제적인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조선의 대외정책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부류가 있었다. 개국론자들이 이에 속하는데 오경석, 박규수, 강위 등이었다. 이들의 대외인식을 강위의 예로써 살펴보자.

강화도조약 당시 실무자로 참여한 강위는 두 차례의 북경 방문을 통해 조선이 처한 국제정세를 알 수 있었다. 강위는 1873년과 1874년 두 차례 청의 북경을 방문했다. 강위가 1873년 북경을 방문했을 때, 조선측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일본과 서양세력의 한반도 침략설의 진위문제였다. 청의 양무과 관료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위는 청이 대외관계를 소홀히 하여 국가가 넘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조선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서양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갖고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도 들었다. 그리고 전쟁이나 조약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強兵에 힘써야 하고,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自強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³⁾ 1874년 북경 방문에서 강위를 비롯한 조선측의 최대 관심사는 대만사건이었다. 일본이 대만사건을 일으킨 후 그 잔여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⁴⁾ 이같은 일본과 서양세력에 대한 위기의식은 강위를 비롯한 개국론자들에게 개국통상이라는 쪽으로 조선의 대외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외압에 무력한 청의 모습과 청 관리와의 필담에서 청이 조선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당시 청은 조선이란 그들의 ‘조공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이는 강화도조약체결 당시 일본측이 청에 대해 조선과의 관계

3) 姜瑋, 『北遊談草』 『姜瑋全集』 下,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8.

4) 姜瑋, 『北遊續談草』 『姜瑋全集』 下,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8.

를 질의했을 때 반응한 청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은 조선과의 강화도조약 체결을 피하면서 청의 조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자 청과 조선의 조공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 당시 청에 주재했던 일본 공사 森有禮는 청의 북양대신 沈桂芳과 면담하면서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는데 청이 조선을 속국이라 하여 이를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므로 조선에 대한 청의 입장을 명확히 답변하라고 재촉했다. 이에 대해 청측은 조약체결은 속국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⁵⁾ 이때 '속국 자주'라는 단어는 조선과 청, 그리고 일본에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었다. 청이 의미하는 자주는 전근대 조공관계라는 틀 내에서의 자주였고, '속국' 개념 또한 전근대 조공관계에서의 '속방'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그들이 사용한 '속국' 개념은 근대 만국공법적 관계에서의 '속국'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들 개념을 교묘하게 착종시켜 사용하면서 조선을 청의 영향하에서 배제하고자 자주 내지는 '독립'이라는 용어를 들면서 조선은 조공을 할 필요가 없는 독립국이라는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근대 조공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당시 일본이 처한 한계였다. 한편, 조선은 강화도조약 이후 서서히 전통적 조공관계를 불식하고 만국공법적 국제관계를 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으므로 '자주'의 의미도 전래적인 것과는 달리 파악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2. 전근대 조공관계와 근대 만국공법적 관계의 병존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은 만국공법체제하에서 독립국 대 독립국 간에 체결되는 조약관계의 실현이었다. 이로써 조선에서는 청과

5) 伊藤博文公 編,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上, 65-68쪽.

의 조공관계 유지, 일본과의 만국공법적 관계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국제 관계가 병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청의 외압이 커지면서 그리고 조선이 서구제국과 조약관계를 맺으면서 기왕의 조공관계는 조선의 개화정책 추진에 질곡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조선과 청과의 사이에 맺어진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이하 ‘장정’으로 줄여 씀)이었다.

조선과 청은 서로간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조선은 事大使行 폐기 등을 요구하며 만국공법적인 평등관계로 대청관계를 변화시키려 했고, 청은 종래의 조공관계에 가탁하여 근대적인 속국으로 대조선관계를 변경시키고자함에 이 과정에서 ‘장정’이 체결되었다.

‘장정’ 체결을 주도했던 李鴻章은 속방과의 교역은 대등한 나라와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는 만국공법에 입각해 ‘장정’을 체결한다고 했다. 그리고 장정체결을 통해 조·청 양국이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속방과 교섭하는 체통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藩服을 지키면서 이권을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했다⁶⁾는 것이었다. 요컨대 이홍장은 전통적 조공관계에서 ‘속방’ 개념을 근대 만국공법에서의 ‘속국’ 개념으로 등치시키는 방법으로 조청관계를 변질시키려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측의 어윤중은 ‘장정’이 체결되기 전 ‘장정’내용에 대해 청측 대표인 周馥과 馬建忠과 논의하는 가운데 개항장에서의 재판관 할권문제와 양국 연안에서의 어채문제, 한성개간 및 內地探辦문제, 홍삼 세율문제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어윤중이 수정요구를 한 이유는 ‘장정’이 공법을 참작하여 규정되었지만 조선과 청간의 사대관계에 입각한 규정내용이 다른 나라에 援用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⁷⁾ 이런 우려

6)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다음부터는 『關係史料』로 줄여 씀) 3, #594, 979a쪽, 光緒 8년 8월 30일, #596, 987a쪽, 光緒 8년 9월 1일.
7) 『關係史料』 3, #594-(2), 983b, 光緒 8년 8월 30일 ;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鴻章)

는 이후 실제로 조선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현실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측은 만국공법 내의 藩屬朝貢之國에 관계되는 무역왕래의 한계는 조선과 청간에 통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전통적 조공관계에서 ‘속방’ 개념을 근대 만국공법에서의 ‘속국’ 개념으로 등치시키는 것이었다. 나아가 조선이 다른 나라와 정한 조약은 양국이 비준한 후에 시행할 수 있는 조약이지만 조·청간의 ‘장정’은 淸 朝廷이 특별히 운준해서 쌍방이 서로 맺은 約章이고 상하가 정한 조규로서 명칭이 ‘條約’과 ‘章程’으로 다르듯이 실제의 내용도 같지 않아 조선이 청과 맺은 ‘장정’과 그 외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는 ‘參差之處’가 있기 마련이라고 반박했다.⁸⁾ 결국 조선은 청과의 관계에서 전통적 조공관계에서의 ‘속방 자주’의 국가가 아니라 근대 식민지적 ‘속국’으로 간주된 것이었다. 이어서 청측은 ‘장정’이 서로 평등한 예를 하는 다른 나라와의 조약과 달라 타국이 원용할 것을 염려하여 수정을 強請하는 것은 조선이 청과의 체제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지 일본을 두려워하고 청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타국이 ‘장정’을 원용할 것이 염려가 된다면 장정에 속방조관을 넣을 것을 제안했다.⁹⁾ 청측이 속방조관 삽입을 조선측에 종용한 것은 속방조항을 명문화하여 다른 나라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이홍장의 계책이었다.

청은 조선과 일본의 통교 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했고, 동시에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진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東三省의 ‘屏蔽’로 인식하고 있었던 조선의 안위를 위해 청 정부는 防日, 防俄의 입장에서 1879년부터 ‘열국입약권도책’을 대조선정책으

全集』譯署函稿(臺北：文海出版社)(다음부터는 『李譯』으로 줄여씀) 권13, 「議朝鮮通商章程」, 光緒 8년 8월 29일.

8) 『關係史料』 3, #594-(3), #984쪽, 光緒 8년 8월 30일.

9) 『關係史料』 3, #594-(3), 986a쪽, 光緒 8년 8월 30일.

로 채택하고 있었다.¹⁰⁾ 그리고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정부에 미국과의 조약체결을 주선했다.¹¹⁾ 이 과정에서 청은 조미조약문 제1조에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결국 미국측의 거절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과의 조약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들 서구제국은 조선과 청과의 조공관계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조선과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다. 이러한 조선 상황에 대해 조불조약을 협상하기 위해 조선에 온 프랑스의 전권위원 코고르당은 조선국왕은 중국에 대한 종속을 인정하나 이러한 종속은 조선과 프랑스 간에 평등하게 교섭해야 하는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다.¹²⁾ 또 다른 프랑스 외교사절은 조선과 중국사이의 조공관계는 양국 상호간의 관계이고, 조선과 다른 국가와의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중국에 조공하는 조선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라고 당시 조선의 국제적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¹³⁾

조선은 문호개방 이후 전근대 조공관계와 근대 만국공법적 관계라는 두 가지 국제관계가 병존하는 속에서 국제적 위치를 정립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權錫奉, 1986, 『清末對朝鮮政策史研究』, 서울: 一潮閣, 79-116쪽; 宋炳基, 1985, 『近代韓中關係史研究』, 단대출판부, 23-32쪽.

11) 당시의 聯美論과 朝美條約締結問題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李善珩, 1961. 『Shufeldt 提督과 1880年の 韓·美交渉』 『歷史學報』 15. ____, 1975 『歐美諸國에 대한 通商修好條約 締結』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____, 1982 『韓美修好通商條約 締結』 『한미수교 100년사』 (국제역사학회의 한국위원회); 宋炳基, 앞의 책.

12)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2, 『한국근현대사 자료집성 11 프랑스외무부문서 1(1854-1899)』, 95쪽.

13) 위의 책, 100쪽.

Ⅲ.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전통적 조공관계의 와해

1. 조선의 초기개화정책과 전통적 조공관계의 이용

조선정부는 18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강화도조약 이후 청과 일본으로부터 서구문물을 수용하면서 논의되어 온 개화론을 근간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큼 조선정부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조선정부는 조공관계를 이용해서 개화정책 추진에 부족한 부분을 청을 통해 補用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청측은 이러한 조선정부의 대청정책을 역이용하는 가운데 기존의 대조선정책과는 달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조선정부의 초기개화정책은 1880년 개화정책 構想案이라 할 수 있는 ‘請示節略’(이후 ‘절략’으로 줄여 씀)과 1882년 임오군변 이후 제시된 정치개혁 방안인 ‘善後事宜六條’로 집약되었다. 조선정부는 이 정책안을 청에 보내 조언을 구했다.¹⁴⁾

‘절략’에 나타난 조선정부의 초기개화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것은 武備自強策과 外國人雇聘論, 對外通商政策이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실제의 개화정책 시행과정에서도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의 대조선정책이 실현되는 고리이기도 했다.

조선정부는 武備自強策을 추진하는 데 청과 일본의 무비정비를 모범으로 삼았다. 특히 淸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이용하여 무비자강책 실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반면에 이것은 조선의 軍備問題에

14) 『關係史料』 2, #353-(6), 475a-480a쪽, 光緒 7년 2월 3일.

청측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는데, 때마침 청 내부에서는 조선의 자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조선을 자국의 ‘屏蔽’로 인식하고 있던 청은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경계심으로 조선의 안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조선과 일본의 조약 체결 이후 조선에서의 일본세력의 영향력증대를 우려하고 있었다. 청은 전래적으로 중국의 속방인 조선이 ‘自固藩籬’할 수 있을 정도로 무비자강책을 도와주어야 조선이 중국의 속방으로 영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¹⁵⁾ 이후 조선과 청은 조선의 유학생을 청에 파견해 군기제조학습을 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 이것은 1881년 9월 조선정부가 청에 영선사를 파견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개화정책의 하나인 무비자강책의 추진과정에서 청은 조선정부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외국인고빙문제는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쇄국으로 인해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조선은 밀려오는 외압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국내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했다. 이런 처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서구근대문물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고문의 채용이었다. 조선정부는 이런 점을 참작하여 외국인고문을 초빙하려고 했다. 그런데 외국인을 고문으로 초빙할 경우 고빙의 목적, 원칙, 그리고 고빙 후 이에 대한 통제 등에 관한 제반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외국인고문을 고빙하려고 한 초창기에는 정책적인 원칙 없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초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고문의 추천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의도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타동적인 채용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외국인 고빙을 통한 청의 간섭이 가능할 수 있었다.

조선은 임오군변 이후 그 동안 설왕설래하던 대외통상사무를 위한 서

15) 『關係史料』 2, #344, 449b쪽, 光緒 6년 11월 22일.

양인고빙을 결정하여 청측의 추천으로 서양인으로서 최초로 뮐렌도르프를 고빙했다. 이 뮐렌도르프의 일기에 의하면 1882년 5월 25일에 주복을 통해서 이홍장이 자신을 조선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¹⁶⁾ 이홍장이 뮐렌도르프를 선택한 이유는 서양인을 고문으로 파견함으로써 청인일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청·일간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조선에서 일본세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¹⁷⁾

한편 조선정부의 對外通商政策은 무관세무역인 對日貿易이 확대 일로에 이르자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일본 이외의 국가와도 교역을 하고자 한 데서 나왔다. 그 결과 청에 통상제의를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청과의 만국공법적인 무역 개시도 기대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1882년 2월 조선정부는 청과의 통상협상을 위해 통상문제에 많은 식견을 갖고 있던 어윤중을 問議官으로 임명하여 청으로 보냈다. 조선정부는 對日·對歐美 통상에 대한 견제책으로서의 청과의 통상요구란 목적과 함께 조선측의 경비부담이었던 조공사절·勅使의 왕래 및 변경개시에 대해서도 통상문제협의시 개선해보고자 했다.¹⁸⁾ 특히 使臣問題는 경비부담에 의한 개선 제의에서 나아가 청과의 관계를 이전의 조공관계에서 근대 만국공법이 관철되는 독립국 대 독립국의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런 점은 이후 어윤중이 청 담당자와 담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¹⁹⁾ 그러나 조선은 전근대 조공관계라는 틀 속에서 청의 ‘裁定’만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했다.

16) 申福龍 외 옮김, 1987 「뮐렌도르프 自傳」 『테니문서, 뮐렌도르프 문서』 서울 : 평민사, 44쪽.

17) 위의 책, 44쪽.

18) 秋月望, 1991 「朝中間の三貿易章程の締結経緯」 『朝鮮學報』 115, 105쪽.

19) 통상문제에 대한 청과의 담판과정은 다음을 참조. 金鍾圓, 1966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대하여」 『歷史學報』 32 ; 秋月望, 위의 논문.

조선정부의 요구는 北道開市 때의 供饋폐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부되고 말았다. 청은 조선정부의 통상제외에 대해 자국을 輕視하는 대담한 요구로 보았다. 또한 事大之典과 관계가 있는 派使駐京의 제외는 조선과 청과의 조공관계를 위반하는 징조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²⁰⁾ 그러나 어윤중은 청측에 이 문제는 조선정부의 更張 의지에서 나온 것이지 전통적 사대관계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²¹⁾

아무리 조선내부의 경장 정치를 위한 것일지라도 일단 청과의 전통적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한 조선정부의 통상정책이 만국공법적인 관계에서 추진될 수는 없었다. 조선정부가 청을 조선과 대등한 국가로 간주하고 제시한 대청통상요청은 오히려 전통적인 ‘속방’ 관계에 가탁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고자 하는 청의 의도로 거절되었다. 이로써 통상관계를 통해 조·청관계를 만국공법하의 독립국 대 독립국의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한 조선정부의 대청정책은 수포로 돌아갔다. 반면에 그 후과로써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계기로 조선은 청의 근대 식민지적 ‘속국’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2.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전통적 조공관계의 와해

1882년 8월 23일 체결된 ‘장정’은 전문(前文)과 8개조로 구성되었다. ‘장정’의 전문 전체와 8개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은 오랜 藩屬國이므로 법전과 예식에 관한 일체는 모두 정해진 제도가 있어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고, 오직 현재 각국이 수륙으로 통상하고

20) 北京古宮博物院 編, 1963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臺北: 文海出版社 (다음부터는 『交涉史料』로 줄여 씀) 권3, #(104)·(105), 17-18쪽, 光緒 8년 4월 29일.

21) 『關係史料』 2, #417-(6), 601b쪽, 光緒 8년 4월 22일.

있는 만큼 우리도 마땅히 항해금지를 폐지해 양국의 商民으로 하여금 일체 상호무역에 종사케 하여 모두 이익을 얻게 해야 하는 바 그 국경과 국경무역의 예도 또한 때에 따라 헤아려 변통할 것이나 오직 금번 체결하는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각국과 일체 균점하는 예에 있지 않으며 이에 각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 商務委員의 파견 및 兩國派員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대등한 위치임을 규정

제2조 : 조선내에서의 청 상무위원의 치외법권 인정

제3조 : 遭難救護 및 평안·황해도와 山東·奉天 연안지방에서의 漁探 허용.

관세규정

제4조 : 北京과 漢城·楊花津에서의 開棧貿易을 허용하되 양국상민의 內地采辦 금지. 단 내지채관 및 遊歷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執照를 받을 것.

관세규정

제5조 : 세칙규정. 柵門·義州, 琿春·會寧에서의 開市

제6조 : 홍삼무역과 세칙규정

제7조 : 招商局輪船 운항 및 청 나라 兵船의 조선연해 왕래·정박

제8조 : 장정의 수정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의 咨文으로 결정

그리고 이 ‘장정’에는 육로통상, 즉 邊境開市の 改編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한 후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그 후 1883년에 “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 “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이 체결됨으로써 육로통상의 상세한 문제들이 규정되었다.

‘장정’은 전문에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고 규정됨으로써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요구되지 않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그 내용도 특권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2조의 치외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 시장을 청국에 고스란히 내어주는 조항까지 들어 있었다. 즉, 제4조의 서울을 개시장으로 한

다는 내용과 호조[여행허가증]가 있으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행상이 가능하다는 내지통상권에 대한 규정, 제7조의 연안무역권의 승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문에는 ‘상국’과 ‘속방’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므로 이 ‘장정’을 다른 나라가 균점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뒤에 체결되는 조약, 특히 일본과 영국간의 조약 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조약 체계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조문이 계기가 되어 조선 시장은 서울에서 벽촌에 이르기까지 외국 상인에게 시장이 개방되고 말았던 것이다.

‘장정’ 체결 당시 청측은 속방조항을 넣어 간접적으로 조선이 근대 국제법상 청 나라의 속국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각국으로부터 인정받자 했다. 당시 협상 담당자였던 어윤중은 속방조항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어윤중이 청 나라가 강요하는 속방조항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기왕의 조선과 청 나라와의 조공관계를 충분히 활용하는 가운데 청 나라를 조선을 방위해 줄 수 있는 국가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청 나라가 전통적 조공관계에 가탁하여 조·청관계를 근대적 종속관계로 개편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단지 전래적인 조공관계로만 파악하고 있었다. 전래적인 조공관계에서는 공물을 바치고 의례적인 행사 몇 가지만 하면 청 나라가 조선을 병합하려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어윤중 뿐 아니라 당시 대다수의 조선 인민이 가졌던 對淸認識의 한계였다.

조선정부가 기왕의 조공관계에서 벗어나 근대 국제법적인 평등 관계를 지향하면서 청 나라와 ‘장정’을 맺고자 한 것과는 달리, 청 나라는 장정 체결을 통해 근대 국제법에 준하는 속국으로 조선이 명시되기를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장정’은 조선에 대해서는 불평등조약이 되었고, 청 나라는 이 ‘장정’을 통해 조선에 근대적 식민지배를 자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조선과 청의 전통적 조공관계는 와해되었던 것이다.

3. 청의 대조선정책 변화

임오군변이 청군에 진압된 후 조선정부는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향후 조선의 정치개혁방안 즉 ‘善後事宜六條’를 작성했다. 이렇게 조선정부는 개화정책방향을 정립했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과 시설, 인재 등이 부족함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임오군변이 진압된 직후 바로 陳奏使行便에 이 개혁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청의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²²⁾

이홍장은 조선 陳奏使 조영하와 1882년 8월 6일 ‘선후사의육조’에 대해 문답하는 과정에서 조선 개화정책의 추진 방향을 파악했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청의 대조선정책이 구상되었고, 이것은 이홍장이 張佩綸의 조선정책에 관한 ‘條陳六事’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명시되었다.

임오군변 이후 청에서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을 청의 관할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들끓었다. 이러한 의견 중의 하나가 1882년 9월 6일 張佩綸이 조선에 대한 정책으로 건의한 ‘條陳六事’였다. ‘條陳六事’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理商政 : 大員을 파견하여 朝鮮通商大臣으로 삼고 조선의 외교정책을 관장할 것.
- 2) 預兵權 : 조선의 병권을 관장하고 군사교관을 파견하며 洋鎗을 대신 구입해줄 것.
- 3) 救倭約 : 임오군변 이후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조선의 對日本 배상금지불을 위해서는 借款해주지 말 것.

22) 『關係史料』 3, #554, 光緒 8년 8월 8일.

- 4) 購師船 : 청에서快船 2-3척을 건조하여 인천에 駐守시킬 것
- 5) 防奉天 : 조선이 日益多事하므로 奉天방위를 엄하게 할 것
- 6) 爭永興 : 조선의 영흥만은 전략상 要地이므로 防倭·防俄를 위해 영흥을 보호할 것²³⁾

당시 대조선정책의 책임자였던 이홍장은 9월 19일 청정부로부터 장패륜의 ‘條陳六事’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고, 이것이 조선에 대한 청의 지배권확립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임을 알았다. 그는 우선 임오군변을 청군이 진압하고 대원군을 납치해옴으로써 세계만국이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알게되었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각 조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조선정책에 대한 자신의 방침을 밝혔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조선의 내정간섭에 관한 부분이다.

이홍장은 ‘理商政’에서 논한 문제에 대해 내정간섭의 혐의가 있어 일본 및 서구제국과 외교상 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 조선통상대신으로 大員을 파견하여 외교와 內政에 관여하게 할 때 그 職任은 監國과 같다. 그럴 경우 통상대신은 조선국왕과 같은 위치가 되는데 조선이 각국과 교섭할 때 이것은 이들 나라와 청과 외교적 분쟁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구의 예를 보면 屬國은 정치를 자주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나라와 結約할 때는 統轄之國이 주도하며, 半主之國은 통상을 議辦할 수는 있어도 수호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통상대신을 파견하여 조선의 국정을 주도한다면 이것은 서구의 속국의 예와 같다. 이같이 된다면 조선이 일본과 이미 수호조약을 체결했고 미국, 영국, 독일과도 이미 訂約한 상태로서, 조선이 청의 속방임은 밝혔지만, 앞으로 이들 나라와 換約할 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구나 청 자체에 조선을 통할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반대했다.²⁴⁾ 이로써 전

23) 『交涉史料』 4, #157, 28-30쪽, 光緒 8년 9월 18일.

24) 『關係史料』 3, #624-(1), 1030b-1033a쪽, 光緒 8년 10월 13일 ; 『交涉史料』 권4,

통적인 조공관계에서의 ‘속방’과 근대 만국공법체제에서의 ‘속국’의 차이를 이홍장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이홍장의 의견은 갑신정변이후 조선에 원세개를 파견할 때와는 상반된 것으로 갑신정변을 전후하여 이홍장의 조선에 대한 근대 식민지적 속국화 정책은 노골화되었다.

‘預兵權’에 대해서 이홍장은 조선정부가 請示한 ‘선후사의육조’의 整軍制 一條에서 청에 군사교관파견과 洋鎗·炸砲의 借給을 요청해와 조선에 있는 오장경에게 조선군대의 훈련을 지시했고 무기도 보냈다고 했다.²⁵⁾

‘救倭約’에 대해 이홍장은 나라에 한 달분의 저축도 없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設關과 雇員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줄 것을 요청해왔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설도 있는 이 때에 設關·雇員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아들이면 청을 배반할 염려도 있고 해서 關稅와 礦利를 담보로 ‘商務興利’에만 쓰기로 하고 50萬兩을 차관해주었다고 했다.²⁶⁾

‘購師船’에 대하여 이홍장은 조선을 보호하는 것은 청의 門戶를 공고히 하는 것이므로 군함 2척을 시급히 건조해서 조선방어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장은 ‘防奉天’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다.

‘爭永興’에 대하여 이홍장은 영흥의 방비는 조선이 자체적으로 군비강화를 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며 청도 해군력을 강화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⁷⁾ 영흥방비에 대해 이홍장은 10월 2일 조영하와의 면담

#(161), 32-33쪽, 光緒 8년 10월 5일.

25) 『關係史料』 3, #624-(1), 1033쪽, 光緒 8년 10월 13일 ; 『交涉史料』 권4, #(161), 33쪽, 光緒 8년 10월 5일.

26) 『關係史料』 3, #624-(1), 1034a쪽, 光緒 8년 10월 13일 ; 『交涉史料』 권4, #(161), 33-34쪽, 光緒 8년 10월 5일.

27) 『關係史料』 3, #624-(1), 1035a-1037a쪽, 光緒 8년 10월 13일 ; 『交涉史料』 권4, #(161), 34-35쪽, 光緒 8년 10월 5일.

에서 러시아가 영흥을 佔奪하려고 하니 방비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그러자 조영하는 아직 군제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울을 지키기도 힘든데 먼 지방까지 방비할 여력이 없는 것이 걱정이라고 대답했다.²⁸⁾ 이것은 조선정부가 군변으로 무너진 군제를 정비하고자 물적·인적 자원을 청에 요청한 이유이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임오군변 이후 조선정부는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확보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왕의 조공관계를 이용해 청에 원조를 요청했다.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추진에 대한 원조요청은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 침투를 견제해야 하는 청정부에게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청정부는 조선의 개화정책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조선에 외교 통상고문과 군사교관을 파견하여 조선 내·외정을 간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이것은 조선정부의 개화자강정책에서 청이 외압으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IV. 조선에 대한 청의 근대 식민지적 지배와 조선 중립화론

1. 袁世凱 조선‘속방’론의 성격

1885년 10월 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을 갖고 조선에 온 원세개는 청의 대조선정책을 수행하는 대리자였다. 원세개가 임오군변으로 처음 조선에 온 다음 갑신정변 직후 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조선에 오게 된 일면에는 청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에서 두 나라 사이에 야합이

28) 『關係史料』 3, #624-(4), 1040쪽, 光緒 8년 10월 13일 ; 『交涉史料』 권4, #(161)-부건3, 37쪽, 光緒 8년 10월 5일.

있었기 때문이었다. 갑신정변 이후 청·일 양국이 天津條約을 맺고 조선으로부터 양국의 공동철병을 규정한 상태에서 조선의 정황이 引俄拒淸策으로 나타나게 되자 러시아의 남침을 우려하던 청과 일본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조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일본의 외무경 井上馨은 이홍장에게 ‘朝鮮外務辦法’을 전달했다. 여기서 제시한 여덟가지 조목 가운데 여섯번째의 내용은 “중국은 서울에 주재하는 坐探國政大員을 현재 주찰하고 있는 대원보다 유능한 인물을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總辦商務委員 陳樹棠 대신 조선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을 파견하라는 말이었다. 청의 처지에서는 천진조약으로 인해 조선 주둔군을 철수한 상태에서 조선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에 이홍장은 원세개를 조선에 파견해 기왕의 조공관계에 가탁해 조공체제에서의 ‘속방’이었던 조선을 근대 공법체제에서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원세개는 갑신정변 실패 후의 朝鮮政情 및 국제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조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구로서 ‘監國’을 설치할 것을 제의한²⁹⁾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조선에서의 행보는 오로지 조선을 청의 속국, 즉 근대공법에서 정의하는 ‘속국’으로 만드는 데 모아졌다.

원세개는 이른바 제1차 조로밀약사건과 조선중립화안의 대두라는 조선을 둘러싼 정세의 변동 속에서 조선이 청에 대해 저항하며 자주하고자 한다고 파악했다.³⁰⁾ 특히 그간 청측이 북방의 러시아를 방어해야 한다면 서 조선에 방아쇠를 주지시켜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조로밀약사건 즉, 조선의 引俄策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외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조선의 인아책에 청정부를 대표하는 원세개가 민감한

29) 『交涉史料』 권6, #(376)-부건1, 20쪽, 光緒 10년 11월 11일.

30) 『關係史料』 4, #1139, 2098a-2099a쪽, 光緒 12년 4월 4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게다가 원세개는 고종을 비롯한 반청세력이 조선주재 각국사신과 중국사신을 대등하게 보고자 하는 것에 불만이였다. 그는 조선을 ‘半主之國’으로 보았다. ‘半主國’인 조선내부의 반청세력과 조선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간섭을 피해 효과적으로 조선을 침탈하는 것이 원세개의 목표였다. 그러나 그는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드러내놓고 할 때 일어날 서구 열강의 비난이 염려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반청세력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는 문건을 작성해 조선정부와 고종에게 보냈다.

원세개는 조선정부의 引俄拒淸策의 일환으로서 일어난 제2차 조로밀약사건 이후 조선정부와 고종에게 「朝鮮大局論」과 「諭言四條」, 「時事至務十款」을 지어 보냈다. 1886년 7월 29일 원세개가 의정부에 보낸 「조선대국론」은 조선이 청에 의지할 때와 배반할 때의 이해득실을 상론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조선이 서양 열강이나 이웃나라인 일본·러시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인접국이라서 유사시 군대출병이 용이한 중국을 의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겉으로는 조선이 ‘附庸之國’ 같으나 실제로는 영토를 소유하고 있고 무궁토록 보전될 것이므로 수백년간 돌보아 준 중국에 예전대로 복종을 하라는 내용이었다.³¹⁾

원세개가 여기서 조선을 ‘附庸之國’이라고 한 것은, 기왕에 청이 조선을 지칭할 때 ‘屬國’ ‘屬邦’ ‘屬藩’ ‘藩服’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당시 원세개가 갖고 있었던 조선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전통적 조공관계에서 ‘附庸之國’은 ‘조공국’과 또 다른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이는 원세개가 조선을 대체로 근대이후 서양의 식민지와 같이 생각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식민지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식민지를 조선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31) 『高宗實錄』, 고종 23년 7월 29일 ; 『關係史料』 4, #1178-(5), 2160b-2162a쪽, 光緒 12년 9월 26일.

다.

원세개는 조선이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지 않고 청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한다면 부국자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청을 배반했을 때는 조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다.³²⁾ 또한 청의 臣國인 조선은 자주자강할 수 없는 ‘弱小國’·‘貧國’ 이므로 “청을 의지하여야 밖으로부터의 侵侮를 막을 수 있다”³³⁾ 고 강변함으로써 청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가 고종에게 보낸 「諭言四條」와 「時事至務十款」³⁴⁾ 에서는 1886년 7월의 소위 제2차 조로밀약사건에 추동되어 반청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小人’들을 막으라고 했다. 또한 조선을 기울어져 가는 집, 못쓰게 된 배로 비유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外務보다는 內治에 힘을 쓰되 자신은 이러한 조선을 고쳐주는 사람이므로 자신이 조선에 대해 제시해주는 처방안을 조선이 열납할 것을 주장했다.³⁵⁾

요컨대 원세개가 조선정부와 고종에게 보낸 글은 당시 조선정부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던 반청정책을 잠재우고 청의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겨냥한 것으로, 그는 1886년 9월 3일 고종과 가진 필담에서도 “禦外侮之道 惟親中國”³⁶⁾이라고 하면서 청에 복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원세개는 위와 같은 조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의 개화정책을 저지하면서 근대적인 식민지 지배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었다. 이로써

32) 『高宗實錄』, 위와 같음; 『關係史料』, 위와 같음, 2162a-2162b쪽.

33) 『關係史料』 4, #1140-(1), 2104a쪽, 光緒 12년 4월 4일.

34) 『高宗實錄』에는 「時事至務十款」으로 표기되어 있고 중국측 사료에는 「時弊十款」으로 명기되어 있다. 『高宗實錄』, 고종 23년 7월 29일; 『關係史料』 4, #1178-(2), 2150a-2156a, 光緒 12년 9월 26일; 『交涉史料』 권10, #(485), 14쪽, 光緒 12년 9월 4일.

35) 『高宗實錄』, 고종 23년 7월 29일; 『關係史料』 4, #(1178)-(2), 2152a-2153a쪽, 光緒 12년 9월 26일.

36) 『關係史料』 4, #1178-(3), 2156b쪽, 光緒 12년 9월 26일.

전통적 조공관계는 이미 와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兪吉濬 「中立論」의 의미

청의 조선에 대한 압박에 따라 조선의 개화세력에게 청이 조선독립의 방해세력으로 부각되면서 이들의 청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당시 대표적인 개화세력의 한 사람이었던 유길준은 청의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중립론」을 집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길준의 「중립론」을 분석해보면 가중되는 청의 압박에 대응하여 어떻게 대청정책을 모색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유길준의 「중립론」은 1885년에 쓰여졌다. 유길준의 「중립론」이 쓰여질 즈음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열강의 각축 그 자체였다. 조선은 갑신정변 이후 일본이 배상을 요구해오는 가운데 1885년 1월 9일 漢城條約을 체결했고, 일본은 청과 협상을 벌인 끝에 1885년 4월 18일 天津條約을 맺어 청과 함께 조선으로부터 공동철병하는 동시에 조선에 유사시 청과 함께 공동출병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놓고 있었다. 따라서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해 청의 압박이 가중되었다고 해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야욕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조선에 대한 청과 일본의 외압을 기본 축으로 하여 조선과 러시아와의 소위 ‘비밀협약’ 건으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자 러시아와 영국이 외압의 기본축에 덧붙여 가세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파만파가 되어 이들 나라와 이해관계가 있는 열강은 다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말 그대로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이 되는 지경에 있게 되었다. 조선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을 간파한 유길준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타파하고 자주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 보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

던 것 같다.

유길준은 「중립론」을 저술할 당시 조선과 여러 나라 사이의 역학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벨기에와 불가리아의 예를 들어 근대 국제법상의 중립국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중립론」의 서술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가 터키의 贈貢國인 것이 조선이 청의 貢邦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각국과 ‘同等之禮’로 조약을 맺는다는 점에서는 국제적 위치가 서로 다르다고 했다.³⁷⁾ 이로써 보면 유길준이 조선중립화안을 모색하면서 조선과 청 두 나라 사이의 조공관계를 기왕의 전통적인 관념이 아닌 근대적인 국제법상에 올려놓고 조선의 국제적 위치를 풀어나가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조선과 청과의 관계를 기본축으로 놓고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병탄야욕을 가진 나라로 러시아와 일본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 나라와 더불어 조선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로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들었다. 이것이 거문도사건 이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유길준의 인식이었다. 구미제국 중에서 유길준은 조선이 중립국화할 경우 이해를 구해야 하는 나라에 미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조선과 미국과의 역학관계에 대해 그다지 염려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길준은 그 자신이 미국유학길에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미국과 조선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다.

유길준은 1882년 조미수호조약 이후 고종 및 몇몇 조선정부관료들이 갖고 있었던 환상, 즉 조선에 대하여 미국이 외교적 후원이나 군사적 원조를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 된 것임을 지적했다.³⁸⁾ 그는 미국을 조선과의 통상국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유길준은 조선을 침략할 세력으로서 러시아와 일본을 꼽고 있었다.

37) 『兪吉濬全書』Ⅳ (政治經濟 編), 「中立論」, 320쪽.

38) 위의 책, 323쪽.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조선의 대외관계의 지향점은 이들 나라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국제역학관계의 정립이었다. 유길준은 러시아의 東進과 이에 따른 시베리아철도의 가설을 논하면서 이로 인한 조선의 危迫함을 주장했다. 러시아의 東進으로 인하여 조선의 안위가 위급한 시점에서 그 토지와 인민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청이 준 바로서, 러시아가 조선을 엿본지 오래인데도 아직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청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³⁹⁾ 즉, 러시아의 조선침략이 열강간의 세력균형으로 인하여 저지된다 하여도 궁극적인 이유는 청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조선의 안전보장은 청에 달려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도 유길준은 조선침략야욕이 있음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일본 또한 우리 나라를 침략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힘이 부족하여 청과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청이라고 주장했다.⁴⁰⁾ 그는 갑신정변 이후 일본군이 물러가기는 하였지만 다시 침입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었다.⁴¹⁾ 그런데 일본뿐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필요하면 구실을 만들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가장 경계한 나라는 러시아였다.

유길준이 러시아의 조선침략에 대해 이렇듯이 강조하는 데에는 그가 조선과 청의 관계에서 청을 향하여 의도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길준은 결코 조선에 대한 청의 침략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듯했다.⁴²⁾ 그러나 조선과 중국의 전통적인 관계를 언급하면서 당시 조선이 직면한 대외적인 위기상황에서 청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역할을

39) 위의 책, 322쪽.

40) 위와 같음.

41) 위의 책, 324-5쪽.

42) 위와 같음.

기대했던 것 같다.

유길준은 청의 군사력으로 조선을 방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선중립화방안이라고 제시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이 일본이나 러시아의 세력권 안에 들어갈 때, 청의 처지에서는 하나의 속방을 잃어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에 큰 위협을 받게 되므로 조선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청의 처지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조선의 중립국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중립국이 될 경우 청에게는 번거로운 병력동원없이 ‘東顧之憂’를 영원히 잘라낼 수 있는 효용성이 있음을 부각시켰던 것이다.⁴³⁾

유길준은 조선의 중립화는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선 스스로가 주장할 수는 없고 청에 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가 조선중립화안을 청에 요청하는 방법을 제의한 것을 보면,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역학구조 속에서 청이 조선에서 가지는 지배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이 맹주가 되어 조선중립화안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립화안을 청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몇 번이라도 요청하고 또 요청하여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는 유길준이 조선과 청 그리고 두 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볼 때 쉽사리 청이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립론」을 저술할 때의 시기가 조선이 중립국화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라고 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중국에 청하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⁴⁴⁾

「중립론」을 저술할 즈음 유길준은 청에 대해 맹목적인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속방관계를 이용하면서, 조선이

43) 위의 책, 328쪽.

44) 위의 책, 327쪽.

란 국가의 주권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는 조선의 국권유지를 위해서는 강대국 사이의 세력균형을 이용한 조선의 중립국화가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조선을 포기할 수 없었던 당시 청의 처지를 십분 이용하고자 했다. 조선중립국화의 과정에서 청이 맹주국이 되어야 한다는 유길준의 주장은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며, 그 때까지는 조선에 대해 청은 침략야욕이 없다고 파악한 그의 대청인식에 기반한 주장이었다.

V. 청일전쟁 이전 조·청·일의 조선 ‘속방 자주’ 논란과 그 의미

조선 ‘속방’ 문제가 조선과 청, 일본 사이에 논란이 된 것은 淸兵借兵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1893년 3월 중순 농민군의 충청도 報恩 집회를 진압할 병력 동원 방법으로 淸兵借兵이 제기 되었다. 이 때 고종은 다른 나라에서 차병하는 예를 청의 太平天國亂 진압시 英國兵을 차병한 예를 들면서 차병 대상국이 다른 나라가 아닌 청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조선정부관료들은 청병차병이 국제관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조선과 청의 전통적 조공관계에 대한 허위의식이었다.

청병차병문제는 1894년 4월 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의 지방관청을 습격하고 세력을 급속히 확대하는 가운데 다시 거론되었다. 당시 농민군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조선정부내에서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하나

는 1894년 4월 4일 시원임대신회의에서 趙秉世의 주장처럼 民情이 지극히 哀矜한 상태에서 民願을 파악해 이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길은 大更張을 하는 방법이었다.⁴⁵⁾ 이는 내정개혁으로 백성이 혐오하는 폐해를 제거함으로써 농민군을 회유하여 서서히 진정시키고자 하는 案이었다. 그러나 대경장의 방법은 국정을 장악하여 가림주구를 행하고 있던 민씨척족이 정부내에서 축출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쉽게 행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다. 또 다른 하나는 민영준이 주로 주장한 것으로⁴⁶⁾ 청병을 차병해 농민군을 진압하는 방법이었다.⁴⁷⁾ 민영준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병차병을 고집한 것은 민씨척족에게 불리한 내정개혁의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청병차병을 모색했기 때문이었다.⁴⁸⁾

1894년 4월 27일 전주가 농민군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영준은 고종에게 賊勢가 커져 우리 나라의 병사로는 진멸할 수 없으므로 청병을 차병하면 一戰에 박멸할 수 있다고 상주했다. 이에 대해 諸大臣은 청병차병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천진조약에 의해 일본병도 반드시 조선에 들어올 것이므로, 後患을 생각할 때,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의했다.⁴⁹⁾ 그러나 청병차병은 왕권을 유지하려는 고종과 정권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민씨척족정권의 실권자 민영준, 그리고 외압세력의 대표자인 원세개 사이에서 담합이 이루어져 결정되고 말았다.

45) 『日省錄』 고종 31년 4월 4일.

46) 민영준의 청병차병 주장에 대한 배후에 명성황후가 있었음이 황현의 『매천야록』에 기록되어 있다. 김준 역, 1994, 『완역 매천야록』, 교문사, 263쪽.

47) 『日本外交文書』 27-9, #497, 152-153쪽, 1894년 5월 22일.

48) 이 두 방안에 대해 이미 조선주재 일본임시대리공사 杉村濬은 조선정부가 끝내는 시비없이 청병차병 방안을 姑息手段으로서 채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청병의 조선 진입에 대비한 일본의 준비를 본국에 요청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조. 『日本外交文書』 27-9, #497, 153쪽, 1894년 5월 22일.

49) 『日本外交文書』 27-9, #516, 165~166쪽, 1894년 6월 6일.

조선의 청병차병문제가 결정되자 청정부는 5월 3일 정식으로 일본정부에 청병의 조선판병을 알렸다. 청병과병에 관하여 청이 일본에 통지한 내용에는 청이 속방을 보호하는 舊例—임오·갑신 양차 내란을 청병이 조선을 대신해 勘定—가 있음으로 이에 따른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다.⁵⁰⁾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통지문에 ‘보호 속방’이란 단어가 보이는데 자신들은 일찍이 조선국을 청의 속방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회답을 보냈다.⁵¹⁾ 이같은 일본의 반응에 이홍장은 청이 속방을 보호한 예는 前事가 있으므로 역력히 증명할 수가 있고, 천하 각국이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아는데 일본만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 법을 행할 뿐이라고 했다.⁵²⁾ 이 때 청측이 말하는 ‘속방’은 전래적으로 내려오던 조공관계에서의 속방 관념이었고, 일본은 근대 공법체제에서의 ‘속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과 일본은 전통적인 조공관계에 가탁하여 조선 ‘속방’의 의미를 자신의 처지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또한 이에 질세라 전통적 조공관계에서의 조선 ‘속방’이란 허위의식을 갖고 이를 이용해 당면한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다. 이같은 ‘속방’ 개념에 대한 자의적인 이해는 전통적 조공관계가 이미 와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조선 ‘속방’이란 테제는 일본이 가장 잘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청과 開戰하기 위한 빌미로 활용되었다.

청병과병 통고를 받은 일본정부 또한 일본병의 조선판병을 결정했다. 이때 일본정부가 내세운 명목은 공관과 상민보호였지만 내실은 청군의 기선을 제압하고 압도적인 병력으로써 서울 부근의 중요거점을 제압하는데 있었다.⁵³⁾

50) 『日本外交文書』 27-9, #518, 168쪽, 1894년 6월 7일.

51) 『日本外交文書』 27-9, #519, 169쪽, 1894년 6월 7일.

52) 『交涉史料』 권13, #963, 10쪽, 光緒 20년 5월 5일.

53) 박종근, 『청일전쟁과 조선 — 外侵과 抵抗 —』, 박영재 역(일조각, 1989), 16쪽.

일본 兵艦의 인천 來舶을 당하자 고종은 成岐運을 원세개에게 보내 일병이 서울에 들어올 염려가 있으므로 청병의 상륙을 보류해달라고 청했다.⁵⁴⁾ 아울러 외부독판은 日兵의 조선상륙에 대해 지금의 형세가 병력을 파견해 보호해야 할 만한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 또 일본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같은 조치를 할 것이며, 일본병사가 상륙했을 때 야기될 조선인의 격앙된 감정 등을 이유로 상륙정지를 일본정부에 요청해주기를 杉村濬 임시대리공사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⁵⁵⁾ 杉村은 일본정부가 조약상 파병하여 衛館할 권리가 있고, 파병은 일본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결정한 것이므로 조선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못박았다.⁵⁶⁾ 이것은 당시 국제적으로 처한 조선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선정정이 국내외적 상황으로 불안할 때에 일본공사 大鳥는 제차 청과의 開戰의 빌미를 만들고자 5월 23일 조선내정개혁문제를⁵⁷⁾ 가지고 고종을 만났지만 거절당했다.⁵⁸⁾ 이어 미리 예비한 그 후속조치로서⁵⁹⁾ 5월 25일에는 청이 일본에 청병의 조선파병을 알린 통고문에 있는 ‘보호 속방’이란 문구를 들어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 하루를 기한으로 답신해주기를 요구하는 공문을 조선정부에 보냈다.⁶⁰⁾

54) 『交渉史料』 권13, #964, 11쪽, 光緒 20년 5월 5일.

55) 『日本外交文書』 27-9, #523, 171-172쪽, 1894년 6월 8일. #527, 177-178쪽, 1894년 6월 9일.

56) 『日本外交文書』 27-9, #527, 179쪽, 1894년 6월 9일. #546, 195-198쪽, 1894년 6월 13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2(이하『日案』 2로 줄임), 633쪽.

57) 『日本外交文書』 27-8, #384, 573-577쪽. 1894년 6월 28일.

58) 『高宗實錄』 고종 31년 5월 23일; 『交渉史料』 권13, #(1037), 27쪽, 光緒 20년 5월 24일.

59) 『日本外交文書』 27-8, #398, 592-593쪽, 1894년 7월 10일 참조.

60) 『日本外交文書』 27-8, #389, 582-583쪽, 1894년 6월 29일; 『關係史料』 6, #1929-(3), 3340b-3341a쪽, 光緒 20년 6월 23일; 『交渉史料』 권13, #(1039), 27쪽, 光緒 20년

조선정부는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자인할 경우 일본으로부터 받을 위협이 걱정되었고, 부인하자니 청병차병을 부탁하여 파병까지 한 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즉시 회답을 하지 못했다. 조선정부는 원세개와 상의했다. 이 때 조선측이 원세개에게 일본이 병자년의 조·일조약에서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귀절을 들어 청과의 속방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말하자 원세개는 각국과 조약체결시 속방임을 聲明하지 않았느냐고 답변했다. 조선측은 일본과 조약을 맺을 때는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성명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 때의 조약문을 청에 보인 결과 청 또한 조선이 자주임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⁶¹⁾

‘속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질의를 전해들은 이홍장은 원세개에게 조선이 일본을 두려워해 청의 속방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군사를 일으켜 문죄를 하겠다는 말로 조선을 위협해서 경솔하게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훈시했다.⁶²⁾ 조선정부는 고심끝에 일본이 요구한 속방문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했다.⁶³⁾ 청과 일본 병력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당시 조선의 처지를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조선 ‘속방’ 문제는 일본군이 경복궁에 난입하기 전 다시 거론되었다. 일본은 조·청간의 전래적인 속방관념이 국제법의 원칙과 많은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해 조선을 침탈하는 데 방해세력인 청을 타파하고자 하여 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⁴⁾

5월 26일 ; 『日案』 2, 655쪽.

61)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鴻章)全集』(譯書函稿, 臺北: 文海出版社, 이하 『李電』으로 줄임) 권16, 「寄譯署」, 光緒 20년 6월 2일.

62) 『交涉史料』 권13, #(1045), 29쪽, 光緒 20년 5월 27일 ; 『李電』 권15, 「由上海長崎海參威琿春至朝鮮交袁道」, 光緒 20년 5월 26일.

63) 『日案』 2, 656-657쪽, 고종 31년 5월 27일 ; 『關係史料』 6, #1929-(8), 3343쪽, 光緒 20년 6월 23일 ; 『交涉史料』 권14, #(1063), 2쪽, 光緒 20년 6월 2일 ; 『李電』 권16, 「寄譯署」, 光緒 20년 6월 2일. 이 회답은 당시 조선정부의 법률고문이었던 미국인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house)와 유길준이 기안했다고 한다. 杉村濬, 1932 『明治二十七・八年在韓苦心錄』, 29쪽.

일본공사 大鳥는 6월 18일 조선정부에 청이 ‘보호 속방’ 등을 구실로 조선을 무시하고 군대를 조선영토에 주재시키는 것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또한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일조약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빨리 조선에서 청 군대를 퇴거시킬 것을 요구했다.⁶⁵⁾ 이와 아울러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中江通商章程及吉林通商章程”의 폐기도 요구했다.⁶⁶⁾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6월 20일 조선은 자주국이며, 청병의 파병은 조선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南匪가 평정된 후 누차 청병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일본처럼 철병하지 않고 있다는 회답을 보냈다.⁶⁷⁾

‘속방’ 문제에 대한 大鳥의 해명요구는 조선정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아산만에 주둔하고 있던 청 軍門에서 청병이 ‘愛恤屬國’하기 위해 파병되었다고 告示한 것의 사실여부를 타진하며 원세개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원세개는 그 문구가 청 軍門에서 나온 것이 사실이며, 그것은 조선과 청과의 수백년동안 내려오는 체제에 입각한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답했다.⁶⁸⁾

그러나 조선에서의 청과 일본 병력의 대치형세가 청에 불리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원세개의 ‘속방’ 문제에 대한 태도는 달라졌다. 그는 조선과 일본이 조선내정개혁안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청 정부에 조선의 내치는 본래 자주였고 청이 억지로 간섭하지 못한다고 선고하여 조선과 일본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된다면 모든 爭執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4) 『日本外交文書』 27-8, #379, 562-567쪽, 1894년 6월 26일.

65) 『日案』 2, 680-681쪽, 고종 31년 6월 18일; 『日本外交文書』 27-8, #422, 625-627쪽, 1894년 7월 25일.

66) 『日案』 2, 682-683쪽, 고종 31년 6월 18일; 『日本外交文書』 27-8, #422, 628-629쪽, 1894년 7월 25일.

67) 『日案』 2, 684쪽, 光緒 20년 6월 20일.

68) 『日案』 2, 680-682쪽, 고종 31년 6월 18일; 『交涉史料』 권14, #1111, 15쪽, 光緒 20년 6월 8일.

다.69) 이 또한 전통적 조공관계가 얼마나 작위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홍장 또한 일본의 위협을 받은 조선정부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자 각국의 정부에 조선에서의 일본의 행동을 견제해줄 것을 의뢰하는 외에 구체적인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70) 이 점은 원세개 또한 마찬가지로서 그는 大勢가 날로 청에 불리해져감을 누차 청정부에 보고하면서 자신의 귀국을 요청했다.71) 稱病하면서까지 귀국을 요청한 끝에 6월 17일 서울을 떠났다.

원세개가 서울을 떠난 후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에 난입하던 날, 또한 日兵 1,000 여 명은 청의 總理公館과 용산의 분관, 漢城電報總局을 공략하였다. 6월 23일에는 조선과 청간의 통상장정이 폐기되었다. 이와 함께 청의 조선에 대한 근대 식민지적 침탈도 불식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청을 대신한 또 다른 세력의 근대 식민지적 침탈의 가능성에 놓이게 되었다.

VI. 맺음말

1876년 조선의 문호개방은 단순한 ‘개국’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을 들

69) 『交涉史料』 권14, #1115, 16쪽, 光緒 20년 6월 9일 ; 『李電』 권16, 「寄譯署」, 光緒 20년 6월 9일.

70) 『交涉史料』 권14, #1116, 16쪽, 光緒 20년 6월 9일 ; 『李電』 권16, 「寄譯署」, 光緒 20년 6월 9일.

71) 『交涉史料』 권13, #1047, 29쪽, 光緒 20년 5월 28일. 권14, #1067, 3쪽, 光緒 20년 6월 2일. 권14, #1141, 27쪽, 光緒 20년 6월 12일 ; 『李電』 권15, 「寄譯署」, 光緒 20년 5월 27일. 권16, 「寄譯署」, 光緒 20년 6월 12일.

러싼 국제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조선은 전래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로서의 조공관계를 청과 유지하면서 일본 및 서구와는 만국공법적인 조약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것은 전근대적 조공체제 아래에서의 조·청·일 삼국의 전통적 관계가 만국공법체제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국제관계로 바뀌어감을 의미했다. 이로써 조선은 서로 다른 국제질서가 공존하는 가운데 자주적 근대화를 위한 개화정책을 추진해야 했던 것이다.

조선의 초기개화정책은 전래적인 조공관계의 틀 내에서 이를 이용하면서, 또한 그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의 개화정책 추진은 청이 조선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임오군변 이후 청일전쟁으로 조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청이 가해온 정치적·군사적 폭력을 동반한 외압은 조선의 근대사회의 이행을 저해한 결정적 외적 요인이었다. 1882년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이 외적 요인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토대가 되었다.

‘장정’ 체결을 계기로 조선과 청의 전통적 조공관계가 와해된 상태에서도 전통적 조선 ‘속방’ 문제는 조선 자체를 비롯해 청, 일본에 의해 자국에 유리한 대로 서로 이용되는 태세가 되었다. 이 때문에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청이 조선에서 물러나자 조선과 청간의 전근대적 조공관계가 드디어 폐기되었다는 인식의 오류도 나오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좌절로 인한 내정 실패가 1894년 농민전쟁으로 폭발된 후, 조선과 청, 그리고 일본 사이에 일어난 조선 ‘속방 자주’ 논란은 청과 일본이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상투적으로 이용했던 實例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궁극적인 목적은 조선에 대한 근대 식민지적 지배권을 유지 또는 확보하려는 과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北京古宮博物院 編, 1963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臺北：文海出版社.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鴻章)全集』 譯署函稿·電稿, 臺北：文海出版社.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2.

『日本外交文書』 27-9.

『兪吉濬全書』 IV (政治經濟 編), 「中立論」

伊藤博文公 編,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 上.

『姜瑋全集』 下(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8).

申福龍 외 옮김, 1987 「뫼렌도르프 自傳」 『데니문서, 뫼렌도르프 문서』
서울 : 평민사.

權錫奉, 1986 『清末對朝鮮政策史研究』 서울 : 一潮閣.

宋炳基, 1985 『近代韓中關係史研究』 서울 : 단대출판부.

박종근, 『청일전쟁과 조선 — 外侵과 抵抗 —』 박영재 역(일조각, 1989).

金鍾圓, 1966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대하여」 『歷史學報』 32.

秋月望, 1991 「朝中間の三貿易章程の締結経緯」 『朝鮮學報』 115.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朝鮮總督府中樞院.

彭澤周, 1969 『明治初期日韓清關係の研究』 東京 : 塙書房.

林明德, 1970 『袁世凱與朝鮮』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_____, 1984 「甲申政變 前·後期の 清國의 對韓政策」 『季刊京郷 思想과 政策』 가을호.

- _____, 「李鴻章對朝鮮의宗藩政策」,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主編, 1995 『韓國研究論叢』 第一輯, 上海: 人民出版社.
- 梶村秀樹, 「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帝國主義體制への移行」, 梶村秀樹・富岡倍雄 編, 『發展途上經濟の研究』 東京: 世界書院, 1981 「동아시아지역의 제국주의체제로의 이행」, 김영호 편, 1983 『근대 동아시아와 일본제국주의』 한밭출판사.
- 陳偉芳, 「甲午戰前朝鮮的國際矛盾與清政府的失策」, 山東省歷史學會 編, 1986 『甲午戰爭九十周年紀念論文集』 濟南: 齊魯書社
- 浜下武志, 「近代東アジア國際體系」, 平野健一郎 編, 1994 『地域システムと國際關係』 講座現代アジア 4, 東京: 東京大出版會.
- _____, 「朝貢と條約 - 東アジア開港場をめぐる交渉の時代 1834-94」, 溝口雄三・浜下武志・平石直昭・宮嶋博史 編, 1994 『周縁からの歴史』 アジアから考える[3], 東京: 東京大出版會.
- _____, 「地域研究とアジア」, 溝口雄三・浜下武志・平石直昭・宮嶋博史 編, 1993 『地域システム』 アジアから考える』 [2],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_____, 1997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東京: 岩波書店; 糟谷憲一, 「近代的外交體制の創出 — 朝鮮の場合を中心に」,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1992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II 外交と戦争,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茂木敏夫, 「中華世界の「近代」的變容 — 清末の辺境支配」, 溝口雄三・浜下武志・平石直昭・宮嶋博史編, 1993 『地域システムアジアから考える』 [2], 東京: 東京大出版會; 岡本隆司,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 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 名古屋大學出版會.
- 金鳳珍, 2005 「書評 岡本隆司『屬國と自主のあいだ — 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 『歴史學研究』 No. 808, 東京: 歴史學研究會.

Absrtact

Character of the traditional tributary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Koo, Sun-Hee

Opening of Korea in 1876 was that of having change of the Korea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ead of the problem of the simple opening of a country. While Korea maintained a tributary relation as international relations of pre-modern East Asia, Japan and the West connected the treaty relation which carries out a basis to modern international law. Thus, Korea had to promote a enlightenment policy for independent modernization, while different international order lived together. Consequently promotion of a Korean enlightenment policy became the cause by which China could interfere in Korean internal affairs, conversely by this.

China gave strong pressure in the direction of politics and military affairs to Korea from the military-civilian riots in 1882 to China retreated from Korea by the Sino-Japanese War. This became the decisive external factor which blocks that Korea shifts to modern society in such reasons. Like a wide-ranging agreement of Korea and China in 1882, it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basis of this external factor.

Although the traditional tributary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collapsed as a result of the agreement, the problem that Korea was the tributary

of China traditionally became the thesis used by Korea, China, and Japan for each country. Consequently, the view that abandonment of the traditional tributary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was originating in defeat of China from the Sino-Japanese War appeared. It is a wilful distortion of facts.

In short, after the farmer war in 1894 broke out by failure of the internal affair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argument whether Korea is the tributary of China or to be an independence country was one in the example in which three nations used the traditional tributary relation for conventionality. This purpose was that China tended to maintain modern colony-control as it was in Korea, the Japan side tended to seize it.

Key Words : enlightenment policy, traditional tributary relation,
External pressure, Yüan Shih-kaj, Yu Kil-chun

